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1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세 무 과]

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세무과장

『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,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고,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동시에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-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“주민세 재산분” 을 “주민세 사업소분” 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세율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. 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-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세목의 명칭 변경 및 시세의 구세 전환이 주된 내용이라 납세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 요인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.

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1. 3. 11.부터 3. 31.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,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달서구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목 명칭의 변경 및 구세 전환과 관련한 조문의 정비에 관한 것으로서,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00821044
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4.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세무과장)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고,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동시에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주민세 재산분” 을 “주민세 사업소분” 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
- 나.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.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21.3.11.~ 3.31.) 결과 : 의견 없음

마. 조례 · 규칙 심의 결과 : 원안 가결

바.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개편 내용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의 제목 “재산분” 을 “사업소분” 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재산분” 을 “사업소분” 으로 하고, “제1항의 표준세율” 을 “제1 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” 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재산분” 을 “사업소분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주민세 제1절 <u>재산분</u>	제3장 주민세 제1절 <u>사업소분</u>
제7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<u>재산분</u> 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	제7조(세율) ----- -- <u>사업소분</u> ----- - <u>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</u> ----- - .
제8조(신고의무) <u>재산분</u> 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8조(신고의무) <u>사업소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□ 지방세기본법

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세목)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광역시의 군(郡)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.

1. 보통세

- 가. 취득세
- 나. 레저세
- 다. 담배소비세
- 라. 지방소비세
- 마. 주민세
- 바. 지방소득세
- 사. 자동차세

제11조(주민세의 특례) 광역시의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.

□ 지방세법

제3절 사업소분

제80조(과세표준)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.

제81조(세율)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기본세율

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

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
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

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

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
4) 그 밖의 법인: 5만원

2.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제82조(세액계산)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83조(징수방법과 납기 등)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.

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.

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(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서”라 한다)를 발송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.

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제84조(신고의무)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.

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개편 내용

□ 주요 내용

-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*하고,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
 - * 균등분(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), 재산분, 종업원분 →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
 - 또한,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*하고, 재산분의 명칭을 “사업소분”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(균등분 8월, 재산분 7월 ⇒ 개인분·사업소분 8월)

주 민 세 (기 존)			주 민 세 (개 정)		
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	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시세 균등분 (8월)	개인	1만원	시세 개인분(8월)	<좌 동>	
	개인사업자 법인	5만원 5~50만원		구세 사업소분 (8월)	기본세액(5만원) + 사업장 연면적 × 250원/m ²
구세 재산분(7월)	사업자	사업장 연면적 × 250원/m ²	구세 종업원분 (매월)	사업자	<좌 동>
구세 종업원분 (매월)	사업자	월급여총액 × 0.5%	구세 종업원분 (매월)		

□ 세목별 개요 (법 개정 이후 주민세 개인분만 市稅)

- (사업소분 개인사업주 주민세)
 - * 과세기준일(7.1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: 5만원
- (사업소분 법인사업주 주민세)
 - * 사업소분 법인사업주의 기본세율 과세기준 : 법인의 자본금(출자금)에 따라 차등 과세됨
 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 : 5만원
 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: 10만원
 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 억원 초과 : 20만원
- (사업소분 사업장 주민세)
 - * 신고·납부기준 : 과세기준일(7.1) 현재 330m²초과 사업소 연면적 × 250원
- (종업원분 주민세)
 - * 신고·납부기준 :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급여총액(1.5억원 초과시) × 0.5%